

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○ 존경하는 김희걸 도시계획관리위원장님!

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중랑구 제4선거구,

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부위원장 전석기입니다.

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,

건축물 내부공간을 활용하여 조성하는 공개공간, 즉 실내형 공개공간의 정의를 규정하고 층수·최소폭·최소면적 등의 설치기준과 면적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
○ 현재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한파, 미세먼지의 증가는 물론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해 일반시민들의 실외 공개공지 이용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.

- 실외 공개공지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내 활동의 비중이 높은 도시민의 생활을 고려하여 시민에게 보행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“실내형 공개공간” 의 도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.
-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고 실내활동이 많아지는 도시민의 생활을 고려하여 실내형 공개공지의 최소 설치 규모 및 면적 산정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실내 공개공간을 도입, 도시 공간의 공공성, 쾌적성, 활용성을 늘리고자 합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앞서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감안하셔서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